

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의9] <개정 2024. 5. 7.>

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(제24조의4제2항 관련)

구분	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
1.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	가.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·주소·연락처 나. 농약등의 품목명 다.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.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
2. 판매업자	가.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·주소·연락처 나. 농약등의 품목명 다.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.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마.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(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) 바.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(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)
3. 수출입식물방제업자	가.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·주소·연락처 나. 농약등의 품목명 다.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
4. 항공방제업자	가.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·주소·연락처 나. 농약등의 품목명 다.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라. 사용 대상 농작물명

비고

1.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가목 및 다목의 정보는 다음 각 목의 농약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.

가. 영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

나. 법 제14조제2항 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·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

2. 법 제2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출입식물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항공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.

3.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본다.